

系統出荷에 따른 流通体制의 確立

김 남 기
(대한양계협회 전북지부장)

우리 나라의 養鷄産業은 그동안 어려운 試練期를 겪으면서도 成長을 거듭하여 현재는 飼養技術의 向上과 飼育規模의 大型化로 지난날의 農家副業養鷄에서 專業 또는 企業養鷄로 前進하는 轉換點에 位置하고 있습니다.

특히 近年에 와서 어느 程度 安定된 基盤에서 合理的인 養鷄業의 經營은 結果적으로 飼育首數의 增加에 더욱 拍車를 加하였으며 여기에서 生産되는 養鷄産物의 流通處理 問題는 絶對로 輕視할 수 없는 重大한 問題로 登場하게 되었습니다.

養鷄産物 即 계란, 육계, 노계의 處理問題는 流通過程의 整備方案如何에 따라서는 養鷄産業의 興亡이 左右된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養鷄業의 目的은 優良品種의 選擇이나 高度의 飼育技術은 勿論 必須條件이지만 結果는 産物을 安定된 適正價格에 處理하여 經營管理에 차질이 없도록 運營되어야 所期의 成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養鷄産物의 円滑한 流通과 適正價格의 安定을 期하기 爲해서는 完決問題가 養鷄業者 스스로가 團合해서 系統出荷의 基盤造成과 体制을 確立하고 다음에 流通過程을 果敢히 整備하여 生産業者의 權益을 保障받을 수 있어야 만 비로소 우리 養鷄業의 伸張을 期待할 수 있을 것입니다.

生産業者의 位置에서 考察할 때 系統出荷를 爲한 流通体制의 確立이란 勿論 어려운 問題라고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都市 어느 地域을 莫論하고 이

것이 急進的으로 이루어지기에는 事實上 오랜 동안 踏習되어온 商來上의 惡循環과 一時的으로 打破할 수 없는 高질적인 難問題等이 潛在되 있어서 一朝一夕에 解決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便利를 爲主로 생각하여 放置하고 系統出荷体制確立을 忌避한다면 生産業者 아닌 누가 이 問題를 打開할 수 있는 실머리를 풀어 주겠습니까?

이 問題의 解決方案은 오직 養鷄業者 모두가 私心を 버리고 一致團結해서 어려운 現實을 外面하거나 目前의 利益이나 便利에만 局限하지 말고 더 좁 大局的인 見地에서 긴 眼目으로 考察한다면 絶對로 어려운 問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現在 우리가 經營하고 있는 養鷄産業은 國內産業中에서도 他産業에 비해 極히 어려운 一次産業이니만큼 産物에 對한 確固한 流通過程에 打開策없이 언젠가 不安한 要因을 除去할 수 없으며 流通体系의 整備는 養鷄業이 持續되는限 必須不可缺의 要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流通過程을 整備해서 系統出荷를 確立하는데 있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先決要件이 地域生産業者의 一致團結에서 이루어지는 協同心이 앞서야 되겠습니다.

둘째 地域내에 養鷄産物의 流通過程을 면밀하게 把握하여 地域都賣業者와 密接한 유대로서 商道義에 立却한 去來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다음에는 季節的인 需要의 變動에 對處하여 外地搬入量의 需給調節을 管察할

수 있는 生産業者와 商人이 共同 參與할 수 있는 協議機構 即 地域流通委員會가 常設되어 隨時로 對話의 廣場을 마련할 수 있는 契機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셋째 生産業者와 販賣業者間에 굳은 信義를 基盤으로 하는 商去來가 이루어져야 所期의 成果를 期約할 수 있을 것이며 商去來上의 질서를 保障하기 爲하여 相互 公證制를 採擇하여 約定書를 交換한다면 法的인 効力도 發生될 뿐더러 流通體系確立에도 原動力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現在 地域養鷄產物 系統出荷에 있어서 生産業者와 販賣業者間에 相互約定 交換되고 있는 公證制約定書를 公開하오니 流通過程 整備에 參考가 되었으면 합니다.

公證制約定書

本約定은 全州, 完州 周邊의 採卵業者와 採卵業者가 指定하는 鷄卵直賣業者(以下 直賣業者라 稱한다)로서 全州一圓에 鷄卵의 圓滑한 流通과 卵價의 安定을 期하고 系統出荷의 體制를 確立하여 相互權益을 保障하기 爲하여 다음 事項을 約定하고 公證制를 採擇한다.

다 음

第1條 本約定書를 作成함에 있어 便宜上 採卵業者(名單 別添)을 甲이라 稱하고 甲이 指定하는 直賣業者를 乙이라 稱한다.

第2條: 社團法人 大韓養鷄協會 全北支部”(以下 “支部”라 稱한다)內에 “全州地域 鷄卵流通委員會”(以下 “委員會”라 稱한다)를 設置하여 委員長과 委員을 다음과 같이 選定한다.

1號 乙은 委員 2名을 推薦하며 또 甲中에서 委員 2名을 選出하고 甲은 甲中에서 委員 2名을 選出한다.

2號 支部長은 當然職 委員長이 된다.

第3條: 委員會는 아래와 같은 業務를 審議決定한다.

1號, 本約定의 第11條, 14條, 15條, 17條의 全條文에 關한 事項을 統括 審議 決定 執行한다.

2號, 本約定規約外의 問題點은 一般通常商價例에 依하여 決定한다.

3號, 支部 卵價調定委員會의 諮問에 應한다.

4號, 新加入 採卵業者의 加入與否를 決定한다.

5號, 本約定의 甲乙 雙方遵守를 爲한 善導를 한다.

第4條: 甲은 生産되는 鷄卵全量을 乙에게 賣出하여야 하며, 乙은 甲의 生産量 全量을 買入하여야 한다.

第5條: 乙은 前第4條의 鷄卵買入을 甲의 養鷄場에서 하여야 하며 運搬時諸費用은 乙의 負擔으로 한다.

但 遠距離와 交通이 極히 不便한 地域은 甲乙相互合議 決定할 수도 있으나 不可時는 委員會의 決定에 따른다.

第6條: 甲의 鷄卵을 乙이 買入하는 取去日字의 間隔은 甲乙相互合議決定하되 決定된 日字는 任意로 變更할 수 없다.

但, 甲乙 相互合議決定된 乙의 買入取去日字는 本約定書 附則에 記載添附한다.

第7條: 甲의 鷄卵代金決裁는 乙이 鷄卵買入 即時 養鷄場에서 支拂함을 原則으로 하되 不得한 境遇는 3日以內에 支拂하여야 한다.

但 甲乙相互協議下에 延拂함은 除外한다.

第8條: 甲의 生産한 鷄卵을 乙이 買價時 數格은 支部卵價調定委員會에서 每週 水, 土曜日 二회에 調定한 價格을 適用한다.

第9條: 鷄卵의 等級은 支部에서 定한 重量에 依하되 特卵中 65g 以上은 通稱 王卵으로 區分한다.

第10條: 甲의 生産卵을 乙이 買入하는 卵價는 買入當日調定價價格을 適用한다.

第11條: 甲에게서 買入한 鷄卵을 乙이 直賣時는 買入價格에 運搬費, 其他經費로 鷄卵個當 五拾錢을 添加하여 販賣한다.

1號, 委員會의 決議에 依하여 直賣價格을 加減할 수도 있다.

2號, 甲의 養鷄場과 乙의 直賣現況 또는 乙의 鷄卵買入, 賣出價格을 隨時로 委員長은 專擔職員과 委員으로 하여금 把握토록 한다.

3號, 前第10條의 買入當日調定價格이란 每週水, 土曜日의 支部卵價調定日 前日까지의 調定卵價를 말한다.

第12條: 本約定書를 絶對 遵守하고 徹底한 履行을 爲하여 甲乙雙方間에 아래와 같은 違約保證金을 委員會에 保管한다.

第13條: 前第12條의 違約保證金의 比率과 方法은 甲의 産卵鷄 100首當 壹萬원으로 計算하여 個人約束어음으로 表示記載하고 乙은 絶對의 甲의 表示金額과 同一한 約束어음으로 한다.

1號, 甲의 産卵鷄首數 및 生産量은 支部에서 每月 調査記錄된 台帳을 基準으로 한다.

第14條: 1號 甲乙雙方間에 本約定을 違約할 時는 即時 이를 書面으로 委員長에게 提出하고 委員長은 委員會를 召集하여 委員會에서 違約事項이 明白하다고 判定決議될 時는 違約者가 委員會에 違約保證金으로 提出 保管중인 約束어음 金額을 委員長은 違約者에게 請求하며 違約者는 即時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

2號, 違約者가 前1號의 約定을 履行치 아니할 때에는 即時 強制執行을 加하여도 何等의 異義나 不服을 提起하지 못한다.

3號, 違約者에 對한 強制執行으로 違約金을 委員長이 受領할 時는 遲滯없이 被害當事者에게 支給한다.

第15條: 前第14條의 違約이라 함은

1號, 甲의 生産卵全量을 理由없이 乙에게 賣出拒否時

2號, 乙이 甲의 生産卵全量을 決定된 買入日字를 變更하거나 買入拒否 또는 本約定 第7條를 違約할 時

3號, 甲의 生産卵이 等級에 依한 重量未達 또는 乙이 買入當時 商品價値를 喪失한 境遇

但, 甲이 乙의 警告를 默殺한 境遇에 限한

4號, 乙은 季節의 需要가 鈍化될 時는 平素需要에 不足量의 外部搬入量(甲의 生産卵이 아닌 것)을 事前에 中止 或은 調節하여야 한다.

5號, 前4號의 境遇 需要의 鈍화로 鷄卵의 滯貨가 發生時는 卵價를 再調定할 수 있다.

6號, 乙이 甲의 生産卵을 相互合議決定된 日字間隔에 違約하고 取去買入할 時는 本約定書에 明示된 甲의 個別的인 取去買入日字의 卵價를 適用하여 支拂하여야 한다. 但, 天災地變으로 因한 取去不能時는 例外로 한다.

第16條: 本約定 第3條에 對한 審議 決定執行은 委員長을 除外한 委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에 依하여 決定한다.

1號, 可否同數일 境遇에는 委員長이 決定한다.

2號, 特別한 境遇 緊急을 要할 時는 即時 職員을 派送하여 書面決議할 수 있다.

3號, 委員會 召集通知는 會議開催 2日前에 登記郵便書面 또는 直接 本人에게 職員을 派送하거나 電話로 連絡한다.

4號, 委員會에서 決定된 違約者에 對한 強制執行權과 前3項의 通知는 委員長이 管掌한다.

第17條: 1號, 甲乙共히 現業을 廢業할 時는 本約定에 資格이 喪失된다.

2號, 本約定에 對한 甲乙間 去來에 있어서 不得已한 境遇 解約을 하고자 할 때

3號, 前1號, 2號의 境遇에는 甲乙共히 30日前에 委員會에 其事由를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18條: 本約定에 所要되는 經費는 甲乙共히 半分한다.

第19條: 本約定의 有效期限은 西紀1977年 12月 31日까지로 하고 甲乙雙方間에 異議없을 時는 自動 延長한다.

第20條: 本約定은 西紀1976年 6月 1日부터 溯及施行하며 甲乙共히 以上과 같이 捺印하며 印鑑證明書 添附하여 公認人事務所 및 委員會(甲)와 乙이 各各 保管한다.

第21條: 本約定書 및 委任狀의 間印은 前第2條 3號에 明示된 委員中 四人의 捺印으로 한다.

第22條: 本約定의 約定者들은 後日에 이를 證憑하기 爲하여 滋以 連署捺印한다. (捺印者

別添)

附 則

第1條：甲乙共히 提示한 違約保證金(約束 어 음表示金額)을 個別的으로 記載添附한다.

第2條：甲乙雙方間에 決定된 鷄卵收去日字間 隔을 個別的으로 記載添附한다.

第3條：鷄卵收去日 間隔은 甲乙雙方協議下에 變更할 수도 있다.

第4條：本約定書 第4條에 明示된 甲의 生産 卵 全量이라 함은 甲의 自家用 및 不得已한 境遇 處分量 10% 内外를 控除한 量으로 한 다.

西紀一九七五年 十一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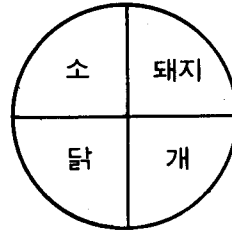
委 任 狀

社團 大韓養鷄協會全北支部長 金 南 起
法人 全州市平和洞貳街壹六九 崔 浩
全州市校洞貳街九四 金 奇 均

本人等이 위의 者를 代理人으로 定하여 全 州地方檢察廳 所屬 公證人事務所에서 別添한 約定書에 公認받는 一切의 行爲 및 謄本受領權 을 委任함.

西紀 1974年 11月 日

委任者
(別添과 같음)



- ★ 수입약품총판
- ★ 국내 우수약품
- ★ 가금질병예방약품
- ★ 가금질병치료약품
- ★ 각종 소독약품
- ★ 가금영양제 및 사료첨가제
- ◎ 가금질병상담
- ◎ 지방주문환영

보인가축약품상사

113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136-21
(서울우유조합정문 앞)
95 - 5445 · 96 - 3463
야간 97 - 4243

상담수익사: 장 경 진

